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 주요 개정 사항

영역	구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공통	지급 시기	변경	- 지급 시기 · 1차(선급금): 8월			
	지급 방법	신설	- 지급 방법 · 비대면 학생지도 실적 인정			
연구	기본 연구 활동 지원비	변경	- 지원 기준 · 연구 성과물 미제출로 인한 기 지급 비용 미반납 시 모든 교내 연구 비용(신진·중견·연구년 등) 지급 제한 · 퇴직 또는 전출 예정 교·직원의 연구 성과물 미제출 또는 기 지급 비용 미반납 시 관련 행정 사항 유보 및 추후 환수 조치			
			- 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연구 성과물 미제출로 인한 기 지급 비용 반납 동의서 제출 의무화			
	- 차등 지급 기준 · ‘가’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학술 서적: 국내·외 학술 저·역서 및 기타 학술 저·역서(3인 이하 저서)</td> </tr> <tr> <td>· 미술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7항의 해당 실적 3건</td> </tr> <tr> <td>· 음악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6·7항의 해당 실적 3건</td> </tr> <tr> <td>· ‘나’ 지급</td> </tr> </table>	- 학술 서적: 국내·외 학술 저·역서 및 기타 학술 저·역서(3인 이하 저서)	· 미술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7항의 해당 실적 3건	· 음악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6·7항의 해당 실적 3건	· ‘나’ 지급
	- 학술 서적: 국내·외 학술 저·역서 및 기타 학술 저·역서(3인 이하 저서)					
· 미술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7항의 해당 실적 3건						
· 음악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6·7항의 해당 실적 3건						
· ‘나’ 지급						
- 학술 서적: 기타 학술 서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미술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7항의 해당 실적 2건</td> </tr> <tr> <td>· 음악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6·7항의 해당 실적 2건</td> </tr> </table>	· 미술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7항의 해당 실적 2건	· 음악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6·7항의 해당 실적 2건			
· 미술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7항의 해당 실적 2건						
· 음악 분야: 교수업적평가 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3·4·5·6·7항의 해당 실적 2건						
연구년 지원 사업	변경	- 신청 자격 · 연구년 유형 분류를 통한 신청 자격 기준 구체화				
신진 및 중견 연구 지원 사업	신설	- 분야별·계열별 지원 금액 · 중견연구에 해외공동연구 신설				
	변경	- 신청 제한 · 일반징계 정직: 정직 기간 동안 제한				

□ 신 · 구 대비표

2019학년도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2020학년도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p>III 지급방법 및 절차</p> <p>□ 지급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선급금): 6월 <p>□ 지급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 ○ 영역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심사 후 40% 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p>III 지급방법 및 절차</p> <p>□ 지급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선급금): 8월 <p>□ 지급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급 ○ 영역별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 심사 후 40% 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활동실적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비대면 학생지도 실적 인정 												
<p>[별첨1]</p> <p>3. 연구영역 지원사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항 목</th> <th style="width: 10%;">내 용</th> <th style="width: 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td> <td>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td> <td></td> </tr> </tbody> </table>	항 목	내 용	비 고	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	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		<p>[별첨1]</p> <p>3. 연구영역 지원사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항 목</th> <th style="width: 10%;">내 용</th> <th style="width: 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td> <td>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 반납동의서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td> <td></td> </tr> </tbody> </table>	항 목	내 용	비 고	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	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 반납동의서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	
항 목	내 용	비 고											
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	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												
항 목	내 용	비 고											
기본연구활동 지원사업	지급 대상 기본연구활동계획서, 반납동의서 및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 자												
<p>4.1. 기본연구활동지원비</p> <p>가. 지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연구성과 미제출로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교원은 당해연도 비용 지급을 유보하며, 반납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한다. <p>나. 지급 시기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지급: 기본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평가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평가한 자에 한해 당해연도 6월(9월 임용자는 10월)에 기준비용의 40%를 지급한다. - 지급예외 및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기간 동안 달성성도가 없는 경우 지급 받은 비용 전체를 환수한다. · 지급 대상자가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징계와 직위해제 등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는 근무기간만큼 월할 산정하여 지급 하되,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로 	<p>4.1. 기본연구활동지원비</p> <p>가. 지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연구성과 미제출로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교원은 당해연도 비용 지급 및 모든 교내 연구비 지급을 제한하며, 반납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한다. - 퇴직 또는 전출 예정 교직원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 지급금액 미 반납 시 퇴직 또는 전출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유보하고 추후 환수한다. <p>나. 지급 시기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지급: 기본연구활동계획서와 반납동의서를 제출한 자 중 평가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평가한 자에 한해 당해연도 8월(9월 임용자는 10월)에 기준비용의 40%를 지급한다. - 지급예외 및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기간 동안 달성성도가 없는 경우 지급 받은 비용 전체를 환수한다. · 지급 대상자가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징계와 직위해제 등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는 근무기간만큼 월할 산정하여 지급 하되,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로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인정한다.

다. 기본연구활동계획서, 중간보고서(1차년도보고서) 및 2차년도계획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자. 차등지급 기준

지급 구분	기준업적
가 지급	다음 성과 중 하나 를 달성한 자 - 국내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주저자 논문 - 국제논문: SCI(E), SSCI, A&HCI, SCOPUS 등재 학술지 주저자 논문 - 도서: 국내외 저역서(3인 이하 저자) - 특허등록: 국내외 특허 대표 발명 - 예체능실적 • 미술분야: 교수업적평가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 3, 4, 5, 6, 8항의 해당실적 3건 • 음악분야: 교수업적평가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 3, 4, 5, 6항의 해당 실적 3건 - 법조실무실적: 교육용사건기록 2건
나 지급	다음 성과 중 하나 를 달성한 자 - 기타 국내외 학술지 주저자 논문 - (학술서적 기준 없음) - 예체능실적 • 미술분야: 교수업적평가항목 2, 3, 4, 5, 6, 8항의 해당실적 2건 • 음악분야: 교수업적평가항목 2, 3, 4, 5, 6항의 해당실적 2건 - 법조실무실적: 교육용사건기록 1건
감액 기준	- CAPD상 학생상담실적 연 10회 미달성: 400만원 감액 (상담내용은 50자이상 작성하되, 연구년·과건·휴직 등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은 해당기간 만큼 제외)

*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포함하여 최대 2명까지 인정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인정한다.

· 회수 기간 및 방법

항목	내용
회수 기간	기 지급받은 기본연구활동지원비용을 전액 반납할 때까지
회수 방법	재직 교원 - 급여공제(원천징수) 원칙 • 매월 10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 •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급여공제(원천징수) 처리 전에 현금일시납으로 연구비 전액을 반납할 수 있고, 급여공제(원천징수) 도중 잔액에 대하여 완납할 수 있음
	퇴직 교원 - 퇴직교원은 현금일시납으로 퇴직 전까지 기 지급 비용 전액 반납

* 단, 기타 부득이한 사정(공제금액 과다로 실질적인 수령액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월 150만원)'보다 작은 경우)으로 월 100만원을 공제하지 못할 경우 공제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 조정에 따른 회수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

다. 기본연구활동계획서, **반납동의서**, 중간보고서(1차년도보고서) 및 2차년도계획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반납동의서(서식 11)

· 연구 결과물 미제출 시 급여 공제를 통한 반납을 동의하는 반납동의서를 기본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자. 차등지급 기준

지급 구분	기준업적
가 지급	다음 성과 중 하나 를 달성한 자 - 국내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주저자 논문 - 국제논문: SCI(E), SSCI, A&HCI, SCOPUS 등재 학술지 주저자 논문 - 학술서적: 국내외 학술 저·역서 및 기타 학술저·역서(3인 이하 저서) - 특허등록: 국내외 특허 대표 발명 - 예체능실적 • 미술분야: 교수업적평가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 3, 4, 5, 7 항의 해당 실적 3건 • 음악분야: 교수업적평가항목 1의 해당 실적 1건, 또는 2, 3, 4, 5, 6, 7항의 해당실적 3건 - 법조실무실적: 교육용사건기록 2건
나 지급	다음 성과 중 하나 를 달성한 자 - 기타 국내외 학술지 주저자 논문 - 기타 학술서적 - 예체능실적 • 미술분야: 교수업적평가항목 2, 3, 4, 5, 7항의 해당실적 2건 • 음악분야: 교수업적평가항목 2, 3, 4, 5, 6, 7항의 해당실적 2건 - 법조실무실적: 교육용사건기록 1건
감액 기준	- CAPD상 학생상담실적 연 10회 미달성: 400만원 감액 (상담내용은 50자이상 작성하되, 연구년·과건·휴직 등 수업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은 해당기간 만큼 제외)

*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포함하여 최대 2명까지 인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학생상담은 제한적으로 인정**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	----------------------------------

4.2. 교내연구지원사업

4.2.1. 연구년 지원사업

다. 신청자격

- ① 연구개시일 기준 우리대학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정년 3년 이내의 교원 중 연구비가 없는 연구년을 신청할 경우 최근 3년 동안) 학술논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과 학술서적(번역서 이상) 점수의 합이 주저자 논문 1편을 포함하여 160점 이상인 자. 다만, 예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는 150점 이상의 연구실적 1건(필수)을 포함하여 연구실적의 합이 160점 이상인 자(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 적용)
- ② 연구기간 6개월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현재 재직 잔여연수가 2.5년 이상인 자
- ③ 연구기간 1년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현재 재직 잔여 연수가 3년 이상인 자
- ④ 연구년 수혜 후 재신청의 경우 연구개시일 기준 6개월 신청자는 연구년 종료 후 재직기간이 3년 이상, 1년 신청자는 연구년 종료 후 재직기간이 6년 이상 경과한 자

라. 신청제한

- ⑩ 징계적용기준: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 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일반징계: 견책, 감봉-2년, 정직-3년/ 연구윤리: 주의, 경고-1년, 견책 이상-3년)

4.2. 교내연구지원사업

4.2.2. 우수논문장려금 지원 사업

나. 지원 금액

지급 구분	학술논문 분류	현행	
		주저자	공저자
우수학술논문	• Cell, Nature, Science 게재 논문	10,000	600
	• Cell, Nature, Science 자매지 게재 논문 (인용지수 20 이상 학술지에 한 함)	7,000	600
SCIE, SSCI, A&HCI 저널 JCR	• JCR 1% 이내 논문	5,000	600
	• JCR 10% 이내 논문	4,000	600
	• JCR 25% 이내 논문	2,000	600

4.2. 교내연구지원사업

4.2.1. 연구년 지원사업

다. 신청자격

1) 연구년 유형 I(연구비 지원)

- ① 연구개시일 기준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및 국내 또는 국제 학술저·역서 점수의 합이 주저자 논문 1편을 포함하여 160점 이상인 자. 다만, 예·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는 150점 이상의 연구실적 1건을 포함하여 연구실적의 합이 160점 이상인 자(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 적용)

- ② 6개월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기준 재직 잔여 연수가 2.5년 이상, 1년 신청자는 연구개시일 기준 재직 잔여 연수가 3년 이상인 자

2) 연구년 유형 II(연구비 미지원)

- ① 연구개시일 기준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이상 및 국내 또는 국제 학술저·역서 점수의 합이 주저자 논문 1편을 포함 100점 이상인 자, 다만 예·체능계 실기분야의 경우는 100점 이상의 연구실적 1건 이상인 자. (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 적용)

- ② 연구비 없는 연구년의 경우 재직 잔여 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신청제한

- ⑩ 징계적용기준: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 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은 경우 처분일 로부터 아래의 신청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일반징계: 정직-정직 기간 동안 제한/ 연구윤리: 주의, 경고-1년, 견책 이상-3년)

4.2. 교내연구지원사업

4.2.2. 우수논문장려금 지원 사업

나. 지원 금액

지급 구분	학술논문 분류	현행	
		주저자	공저자
우수학술논문	• Cell, Nature, Science 게재 논문	10,000	600
	• Cell, Nature, Science 자매지 게재 논문 (인용지수 20 이상 학술지에 한 함)	7,000	600
SCIE, SSCI, A&HCI 저널	• JCR 1% 이내 논문	5,000	600
	• JCR 10% 이내 논문	4,000	300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순위	• JCR 50% 이내 논문 • JCR 100% 이내 논문	1,500 1,000	600 600
첫 번째 계재 논문	• JCR 100% 이내 첫 번째 논문 •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첫 번째 논문	3,000	-
		2,000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연구비지원 표기 없는 등재(후보)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논문	800	200
		600	200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JCR %순위 ¹⁾	• JCR 25% 이내 논문 • JCR 50% 이내 논문 • JCR 100% 이내 논문	2,000 1,500 1,000	300 300 300
첫 번째 논문 ²⁾	• JCR 100% 이내 첫 번째 논문 • 한국연구재단등재 (후보)지 첫 번째 논문 ³⁾ • SCOPUS저널 첫 번째 논문 ⁴⁾	3,000	-
		2,000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⁵⁾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800	200
SCOPUS 저널 ⁶⁾	• SCOPUS 저널 논문	800	200

- 1) JCR 기준은 권, 호, 페이지가 명시된 학술논문 인쇄본 발행일자 당시 기준으로 적용함
- 1) JCR 적용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낮은 %값을 가진 학문분야를 우선 적용함
- 1) JCR 학문분야별 저널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JCR 1%를 적용하지 않으며 학문분야 저널수가 50~99개인 경우 최상위 저널을 JCR 1% 기준으로 지급함
- 2) 첫 번째 논문이란 지원대상 기간 중에 첫 번째로 신청한 논문(주저자급)을 의미함
- 2) JCR 100% 이내 첫 번째 논문 장려금은 200만원,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첫 번째 논문 장려금은 150만원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 장려금은 추후 예산 부족 시 지급하지 않음
- 3), 4), 5), 6)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만 적용됨

4.2.3. 신진 및 중견연구지원사업

나. 분야별/계열별 지원 금액(신진연구, 공동연구, 일반연구, 기초 및 보호학문연구 중 1과제만 선택)

구분 분야별	계열별 지원 연구비				
	인문/사회	예체능	자연		
신진연구	1년 과제	1년차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장비)
	2년 과제	1년차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장비)
중견연구	공동연구	2년차	6,000천원	6,000천원	10,000천원
		캠퍼스간	10,000천원	10,000천원	15,000천원
	학제간	15,000천원	15,000천원	15,000천원	
	일반연구	6,000천원	6,000천원	10,000천원	
	기초 및 보호학문 (공동)	1년차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2년차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3년차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라. 신청 제한

① 연구책임자

㉞ 연구개시일 현재 외부 연구과제(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고형 과제에 한하며 용역 및 위탁 과제 제외)를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경우 2개 과제, 자연(기초, 응용)계열의 경우 1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중 이거나 혹은 용역 및 위탁과제 포함하여 연구비 총액이 8,000

4.2.3. 신진 및 중견연구지원사업

나. 분야별/계열별 지원 금액(신진연구, 공동연구, 일반연구, 기초 및 보호학문연구 중 1과제만 선택)

구분 분야별	계열별 지원 연구비				
	인문/사회	예체능	자연		
신진연구	1년차	10,000천원	10,000천원	10,000천원	
	2년차	6,000천원	6,000천원	10,000천원	
중견연구	공동연구	캠퍼스간	10,000천원	10,000천원	15,000천원
		학제간	15,000천원	15,000천원	15,000천원
	일반연구	6,000천원	6,000천원	10,000천원	
	기초 및 보호학문 (공동)	1년차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2년차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3년차	40,000천원	40,000천원	40,000천원
해외공동연구	10,000천원 (계열공통)	-연구비 \$5,000이상 매칭 필수 -기타 중견 연구 사업 (해외공동연구 제외)과 중복 신청 가능			

라. 신청 제한

① 연구책임자

㉞ 연구개시일 현재 외부 연구과제(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고형 과제에 한하며 용역 및 위탁 과제 제외)를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의 경우 2개 과제, 자연(기초, 응용)계열의 경우 1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중 이거나 혹은 용역 및 위탁과제 포함하여 연구비 총액이 8,000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만원을 초과한 자(다만, 신진연구는 적용 제외)

- ㉔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아 처분일로부터 신청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일반징계: 견책, 감봉-2년, 정직-3년/ 연구 윤리: 주의, 경고-1년, 견책 이상-3년)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만원을 초과한 자(다만, 신진연구 및 **해외공동 연구 적용 제외**)

- ㉔ 연구개시일 기준 징계를 받거나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으로 주의 이상을 받아 처분일로부터 신청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일반징계: 정직-정직 기간 동안 제한**/ 연구 윤리: 주의, 경고-1년, 견책 이상-3년)

<서식 10>

학생지도비 지급 세부기준

지표명	증빙방법	평가배점
학생 상담	학생의 학사/진로/취업/창업 내용에 대한 개인 상담 실적 [전산시스템 입력, 결과보고서]	건당 3점 (학생 1인당 연간 5회 이내)
학생 멘토링	신입생·재학생·외국인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실적 [운영계획서, 전산시스템 입력, 결과 보고서]	건당 5점 (1회당 2명 이내)
학생 안전 교육·지도	학생 안전 교육·지도 활동 실적 - 교육시설물 안전교육·사고 방지 활동 실적 - 대형행사 안전교육·지도 활동 실적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소방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실시기관 운영계획서, 회차별 활동 보고서, 결과보고서]	1시간당 5점 (1일 최대 20점/ 연간 150점 상한)
학생 입장 지도	학생의 행사에 참여하여 입장 지도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실시기관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시간당 5점 (1일 최대 20점)
현장(교육) 실습 지도	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실시기관 운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팀 코칭제	개인 또는 집단(부서/단체) 단위로 팀(그룹) 또는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 학사지도, 진로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한 실적 [운영계획서, 회차별 활동보고서, 결과 보고서]	1팀당 최대 100점 (연간 기준 최소 5회 이상 참여 시)
학생 공모전/취업(창업) 지도	학생들의 공모전 또는 취업대상자(미취업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 [운영계획서, 회차별 활동보고서, 결과 보고서]	50점/추가 참여 시 회당 10점씩 부분점수 인정)
최소 기준	학생지도 영역에서 최소 30점 이상 취득 시부터 지급 (학생지도 실적 1점당 20,000원) * 최종 실적이 30점이 안되는 경우, 지급받은 선급금 환수 조치(30점 이상이나 선급금보다 최종 실적이 적은 경우, 차액 환수 조치)	
증빙자료 필수 사항	* 상담·멘토링 전산시스템 입력: 100자 이상 * 안전교육·안전지도·입장지도·현장(교육)실습지도 결과보고서: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사진 첨부 * 팀코칭제, 학생 공모전/취업 지도 회차별 활동 보고서: 활동 시간, 활동 내용	
지표별 세부 기준	각 지표별 인정기준, 운영방법, 활용서식 등은 「2019학년도 교직원 학생지도 활동 업무 처리기준」에 의함	

※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인정 및 비용 지급

<서식 10>

학생지도비 지급 세부기준

지표명	증빙방법	평가배점
학생 상담	학생의 학사/진로/취업/창업 내용에 대한 개인 상담 실적 [전산시스템 입력, 결과보고서, 비대면 실적자료]	건당 3점 (학생 1인당 연간 5회 이내)
학생 멘토링	신입생·재학생·외국인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실적 [운영계획서, 전산시스템 입력, 결과 보고서, 비대면 실적자료]	건당 5점 (1회당 2명 이내)
학생 안전 교육·지도	학생 안전 교육·지도 활동 실적 - 교육시설물 안전교육·사고 방지 활동 실적 - 대형행사 안전교육·지도 활동 실적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소방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실시기관 운영계획서, 회차별 활동보고서, 결과보고서]	1시간당 5점 (1일 최대 20점/ 연간 150점 상한)
학생 입장 지도	학생의 행사에 참여하여 입장 지도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 [실시기관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시간당 5점 (1일 최대 20점)
현장(교육) 실습 지도	학생들의 현장실습 또는 교육에 참여하여 지도한 실적 [실시기관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팀 코칭제	개인 또는 집단(부서/단체) 단위로 팀(그룹) 또는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 학사지도, 진로 또는 취업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한 실적 [운영계획서, 회차별 활동보고서, 결과 보고서, 비대면 실적자료]	1팀당 최대 100점 (연간 기준 최소 5회 이상 참여 시)
학생 공모전/취업(창업) 지도	학생들의 공모전 또는 취업대상자(미취업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도하여 공헌한 실적 [운영계획서, 회차별 활동보고서, 결과 보고서, 비대면 실적자료]	50점/추가 참여 시 회당 10점씩 부분점수 인정)
최소 기준	학생지도 영역에서 최소 30점 이상 취득 시부터 지급 (학생지도 실적 1점당 20,000원) * 최종 실적이 30점이 안되는 경우, 지급받은 선급금 환수 조치(30점 이상이나 선급금보다 최종 실적이 적은 경우, 차액 환수 조치)	
증빙자료 필수 사항	* 상담·멘토링 전산시스템 입력: 100자 이상 * 안전교육·안전지도·입장지도·현장(교육)실습지도 결과보고서: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사진 첨부 * 팀코칭제, 학생 공모전/취업 지도 회차별 활동 보고서: 활동 시간, 활동 내용 * 학생 상담, 학생 멘토링, 팀코칭제, 학생 공모전/취업(창업지도) 비대면 실적자료: 화상회의 프로그램(팀즈, MEET, ZOOM 등)을 활용하여 진행한 활동의 캡처화면 등	
지표별 세부 기준	각 지표별 인정기준, 운영방법, 활용서식 등은 「2020학년도 교직원 학생지도 활동 업무 처리기준」에 의함	

※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인정 및 비용 지급, **비대면 학생지도 진행시에만 비대면 실적자료 추가 제출**

2019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2020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

<서식 11>
<기본연구활동지원비 반납 동의서>

연구자	소 속	대학	
사 번	성 명	학과(부)	(인)
연구 기간	20 ~ 20 (최대 2년)		
반납 방법	급여공제: 월 100만원씩 연구비잔액 반납 시까지		
<p>상기 본인은 2020학년도 전남대학교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지침』에 의거 최종 연구성과물을 연구기간 안에 미제출할 경우 기 지급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20 년 월 일</p> <p>전남대학교총장 귀하</p>			